

이전 지역인재

* 국토교통부 예규 제639호 「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에 따름

이전 지역인재란?

대학원 이상을 제외한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광주·전남 소재의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

※ 대학졸업예정자는 4년(=8학기, 전문대학의 경우 2년=4학기) 이상 등록하고, 최종학기 수강 신청 학점을 포함해서 졸업학점에 도달된 자로서,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에 따라 졸업예정자로 인정되어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하고, 예술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시점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함

■ [광주·전남] 이전지역 학교

※ 대학원 이상을 제외한 최종학력이 하기 ①~③ 학교에 속하는 경우 광주·전남 이전 지역인재 해당, 이외 해당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 참고 또는 담당자 문의를 통해 확인 필수(이전 지역인재 해당 여부 오기재·허위기재 시,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음)

-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광주·전남 소재의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외국학교 및 외국학교의 분교 제외)
- ②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 ③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사이버대학 제외)·기술대학·각종학교 등의 본교, 「고등교육법」 제24조에 따른 분교 및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지방캠퍼스(이원화캠퍼스)

(광주·전남) 이전지역 학교에 속하는 대학

· 광신대	· 동강대	· 순천대	· 초당대
· 광양보건대	· 동신대	· 순천제일대	· 한국에너지공과대
· 광주가톨릭대	· 동아보건대	· 영산선학대	· 한국폴리텍대
· 광주교대	· 목포가톨릭대	· 전남과학대	(광주·순천·전남)
· 광주대	· 목포과학대	· 전남대(광주·여수)	· 한영대
· 광주보건대	· 목포대	· 전남도립대	· 호남대
· 광주여대	· 목포해양대	· 조선간호대	· 호남신학대
· 기독간호대	· 서영대(광주)	· 조선대	
· 나주대	· 세한대(영암)	· 조선이공대	
· 남부대	· 송원대	· 청암대	

상기 학교 이외 판단이 필요한 경우 소속대학을 통해 광주·전남 이전 지역학교 여부 확인 필수

-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경우, 광주전남지역대학에서 교육과정 전 기간을 수강하고 졸업한 경우 인정
→ 수강 지역대학 중도 변경 이력 있는 경우 불인정
- * 원광디지털대(광주캠퍼스)는 사이버대학으로 이전지역 학교에 해당하지 않음
- * 본교가 광주·전남에 위치한 서영대 파주캠퍼스 및 세한대 당진캠퍼스 졸업(또는 예정)자는 광주·전남 지역인재에 포함

붙임2

취업지원(보훈)대상자별 적용 가점 비율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부여

* 세부 적용 방식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주요내용

-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대상별로 10% 또는 5% 가점 부여
-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 각 시험마다 가점을 부여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가점 부여
단, 취업지원 대상자 점수가 40%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점하지 아니함
-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최종설발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선발예정인원이 최소 4명 이상이어야 가점부여 가능)

■ 보훈대상자별 적용 가점 비율

※ 보훈 가산점 해당자는 서류전형 합격 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제출처 예술위원회 명시)

대 상 별	10% 가점	5% 가점
독립유공자	① 순국선열의 유족 및 애국지사 ② 애국지사가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㉓ 애국지사의 가족 ㉔ 애국지사가 등록신청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㉕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지정하는 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국가유공자	①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②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및 자녀	㉖ 좌측 ①번 대상자의 배우자 ㉗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상이등급 6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보훈보상 대상자	①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②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㉘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
5·18민주 유공자	①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②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및 자녀	㉙ 좌측 ①번 대상자의 배우자 ㉚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애등급 11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특수임무 유공자	①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②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및 자녀	㉛ 좌측 ①번 대상자의 배우자 ㉜ 특수임무부상자 중 상이등급 6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고엽제 후유의증	①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㉝ 좌측 ①번 대상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 ㉞ 수당지급 대상자 중 장애등급 중등도 이상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

편의지원 대상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채용 응시원서 접수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는 지원자

유의사항

- 다음 페이지의 [참고1]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을 확인하여주시고, 편의지원 제공이 필요하신 경우 하단의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편의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문의사항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채용담당(061-900-2186)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편의지원 제공 신청서

본인은 202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입사원(채용형 인턴) 채용 전형에 지원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편의지원 제공을 신청합니다.

① 장애 유형 및 정도 : _____

② 편의지원 제공 신청내용 : _____

※ 편의지원 제공에 관한 사항은 증빙서류를 참고하여 본인과 통화한 후 최종 결정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_____ (서명 또는 날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 첨부 장애인증명서 1부

■ 필기전형

장애유형(장애정도)		편의지원 내용	증빙서류	비 고	
지체장애	상지	공 통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 시험시간 1.5배 연장	장애인증명서	기존 1급~3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 가능)	장애인증명서	기존 4급~6급
	하지	공통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장애인증명서	기존 1급~6급
뇌병변장애	공 통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장애인증명서	기존 1급~3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중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 시험시간 1.5배 연장	의사진단서 (원본)	기존 4급~6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 가능)	장애인증명서	
시각장애	공 통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의사진단서 (원본)	기존 1~2급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 사용필요성을 인정 받은 사람	· 시험시간 1.7배 연장 ·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기존 3급 2호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시험시간 1.5배 연장 ·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장애인증명서	기존 3급 1,2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 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 시험시간 1.7배 연장 ·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의사진단서 (원본) *시력 또는 시야값 명기	기존 4급 2호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시험시간 1.5배 연장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의사진단서 (원본) *시력 또는 시야값 명기	기존 4,5급 1호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인 사람	· 시험시간 1.5배 연장		기존 6급 중 좋은 눈 시력 0.3이하
		위 조건 외의 시각장애인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 가능)	장애인증명서	기존 5급 2호, 6급
	청각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심하지 않은 사람	·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장애인증명서	기존 2~6급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정도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편의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확대문제지 : A3 규격의 118%(14point), 150%(18point)로 확대된 2종류 중 택1

* 확대답안지 : A3 규격의 표기형과 기입형 2종류 중 택1

* 축소문제지 : A4 규격의 82%(10point)로 축소된 문제지를 확대독서기 사용자에게 한하여 신청

■ 면접전형

장애유형 및 정도		면접전형 편의지원 내용	추가 증빙서류
지체장애	상지	· 전담 도우미 지원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
	하지	· 전담 도우미 지원 · 엘리베이터로 이동 가능 층 배치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뇌병변 장애		· 전담 도우미 지원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 면접위원 간 거리 근접(1.5m내외) 조정	-
		· 면접시간 1.5배 연장	의사진단서(원본)
시각장애		· 전담 도우미 지원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
청각장애		· 보조공학기기(인공와우 등) 착용 허용 · 면접위원 간 거리 근접(1.5m내외) 조정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
		· 면접시간 1.5배 연장	의사진단서(원본)